

# 검 토 보 고

##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- 동 조례안은 1998년 10월 2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2일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음.

### □ 제안이유

현재의 정원조례상에는 본청, 직속기관, 사업소, 읍·면·동 등 6개 단위로 정원을 규정하여 소속기관별 1명의 정원을 조정할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정원조정에 대한 탄력성을 유지하고 의회의 심의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의 2개 단위로 통합하려는 것임.

### □ 주요골자

- 시본청, 의회사무국, 직속기관, 사업소, 출장소, 읍·면·동의 6개 단위로 정원을 관리하던 것을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의 2개 단위로 통합하여 규정.(안제2조)

### □ 검토의견

- 동 조례안은 현행 조례상에 본청, 의회사무기구, 사업소, 직속기관, 출장소, 읍·면·동의 6개 정원관리 기관별로 정원을 규정하고 있던 것을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의 2개 단위로 통합하려는 것으로,

- 현재 정원조례의 경우 소속기관 1명의 정원을 조정하더라도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뿐만아니라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하는 사항임.
- 따라서 이러한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 집행기관, 의회사무기구의 2개 단위로 정원을 관리토록 규정하는 것은 기관별 기능배분과 정원조정의 탄력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.